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편성 기준 마련〉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36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편성 기준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2. 5.
3. 회 부 일: 2025. 12.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격차가 크고,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편성 기준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 -----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¹⁾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1) 2016.2.3.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근거가 처음 마련된 이후, 2022.2.3.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었음.

하고 있음.

[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 사례]

조례명	관련 규정(예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지원)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 밖의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17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회에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각 호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담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②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영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담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 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기관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등이 수행하는 사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담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 있으나, 운영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격차가 크고,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조례에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정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별 운영비 지원이 보다 일관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의 차이²⁾, 운영비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지방자치법」 제137조³⁾의 지방재정 자주성 취지와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수 있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권 제한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 시 지원 범위를 개별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상이하고,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 없이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사업수행의 어려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2024년 재정자립도(%): 서울 81.43, 세종 61.79, 부산 52.66, 충남 40.64, 전북 31.07, 전남 32.09 등

3)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문 의 처
02)6788-5375